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지부교섭 속보 11호

2020.08.21(금)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11차 지부교섭_4차 제시안 제출]

끝낼 의지 없는 사측!

교섭 안 끝낼건가!

20일(목) 열린 11차 지부교섭에서 4차 제시안이 나왔다. 공직취임에 대해서 일부 수정된 내용을 제시했지만, 지부가 수용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특히 사측은 공직취임에 대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인정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교섭에서 여러 차례 그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회, 지부 담당간부 시간활애에 대해서도 지회 담당간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지부로 직접 가입한 사무직 개별조합원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교섭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이다.

<4차 제시안>

1. 2020년 임금인상 : 각 지회별 협의 후 추후 제시

2.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 추후 제시

3. 공직취임

1) 회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임원 또는 간부로 선출될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해당자의 근로제공 의무 및 성실의무 등 근로계약상 의무의 정상적인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한다.

2) 회사는 해당자와 회사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임원 또는 간부로 재직하는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회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임원 또는 간부로 재직하는 자에게 그러한 상급단체의 임원 또는 간부직에 출마하여 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이유로 그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4) 회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임원 또는 간부로 재직하는 자가 복귀를 원할 경우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유사직에 복귀시킨다.

5) 해당자의 처우(급여 및 복리후생)는 지회별 별도협의를 통해 정한다.

4.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추후 제시

5. 본조 및 지부 주관 회의시 지회, 지부 담당간부 시간활애 : 2008년 지부교섭 합의안 유지. (지회 간부에 한해서 분기8시간 인정)

9/2 지부 2차 파업! 9/9 금속노조 파업!

지부는 이번주까지 만족할만한 의견접근안이 없으면 9/2일 지부 2차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9/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의 타결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9월 파업은 모두 사측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차기 교섭 : 9/3(목) 15시 한은 교육문화관

11차 교섭 속기록

선출직, 임명직 모두 공직취임 인정해라

노 :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걱정이 많다. 뭔가 해결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부교섭이 빨리 타결돼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거리두기 해야하는데 자주 만나는 것조차도 낭비인 것 같다. 웬만하면 오늘 조합이 받은 만한 안을 제시해서 지부교섭 마무리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받는 고통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

사 :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시점에서 다시 유행이 돼서 부담이다. 사업장 내 출장도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마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빠른 시일에 교섭 마무리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제시안 준비했지만 조합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했는데 만족할만한 내용이 안돼서 답답하다. 최선을 다해서 현명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제시안 제출〉 〈정화〉

사 : 오늘 근접할 수 있는 안을 내고 중앙교섭 보면서 마무리하길 바랐다. 일부 회사는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좀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근접한 안을 제출하자고 의견은 모았다.

노 : 임금동결은 불승인 조건이라 그점은 참고하셔라.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은 중앙교섭 내용이 나오면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것도 못받겠다고 하는 사업장은 없겠죠? 그건 약속할 수 있나?

사 : 아직 합의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 답하기 어렵다. 과거 선례로 보면 가급적 하겠다는 것이다.

노 : 예외는 있으면 안될 것 같다. 그 부분은 중앙교섭 내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게 좋을 것 같다. 공직취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명직은 안된다는 의사를 보이는 건가?

사 :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금 제시안은 선출직에 한정해서 제시한 것이다.

노 : 임명직도 다시 고민해달라.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하자고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지회별로 전임자 1~2명이다. 그런데서 상급단체 전임자까지 빼올 수 없다. 1항에 적은 문구의 취지가 뭐가?

사 : 인정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의무 조항은 잘 이행하는 조건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 :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전임활동을 인정하라는 요구인데, 회사는 근무하고 나가라는 뜻으로 보인다. 처우는 지회별로 별도협의한다고 제시했는데, 별도협의를 동의할 수 있는데 '지회별'은 삭제해야 한다. 지부가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사항은 지급하는 걸로 인정해야 한다. 복지 지급 의사 밝히고 처우는 별도 협의하는 걸로 제시해주면 좋겠다. 간부시간할에 관해서 기존합의안 유지하자고 했는데, 담당 지회 간부만 해당한다. 지부간부에 대해 시간할애가 필요하다. 이 제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말씀드린 부분 감안해서 다음에 더 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사 : 최종안 제시할 때 참고하겠다. 개별조합원 중 지부간부 시간할애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조합원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해당업무에 지장을 줄 여지도 많다. 지회에서 맺은 단협이 있는데 지부가 별도로 요구하는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다. 지회 교섭에서도 이 내용이 거의 막판까지 갈 것 같다.

노 : 사업장에서 맺은 단협 존중한다. 하지만 노조법상 조합원 범위는 어떻게 할건가? 가입하는 조합원들을 막을 수는 없다. 사무직들이 가입하는 상황은 회사가 잘못된거다. 가입한 이상 노조활동할 수밖에 없다. 안풀리면 별도 사무직지회 설립까지 할 수도 있다.